

# 초단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연구진 : 기호운, 김보희, 백승호, 신희주, 이용우, 정흥준, 김종빈)



# 개요

---

- 초단시간 노동자 : 정의와 문제
-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추세
- 연구 결론
- 정책 과제

# 초단시간 노동자 : 정의와 문제

---



#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

---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
-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00시 문화재단 관리자의 변

- **비용, 보험 다 들어야 되니까.** 고용, 산재는 저희가 초단시간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보험이나 이런 회사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정규직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정규직 고용을 똑같이 면접을 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일을 했다고 뭔가 몇 년 동안 일했다고 전환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런 위험성을.
-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들이 있으시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없으시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보통 다니니까, 한 20살 21살에 들어와서 졸업하고, 취업, 직장 잡을 때까지 보통 한 4~5년의 시간을 저희가 예상하잖아요. 그 정도씩 일을 한다고. 짧게는 1년 6개월? 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 이 친구들이 근무를 할 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숙련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11개월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새로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내보내면 또 교육하고 내보내고 그럼 이제 업무가 어쨌든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숙련도가 없는 친구들이 응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래서 길게 할수록 본인들이 조금 근무할 때 편하긴 하죠. 이분들도. 신입의 입장에서보다는.

# 치킨집 사장님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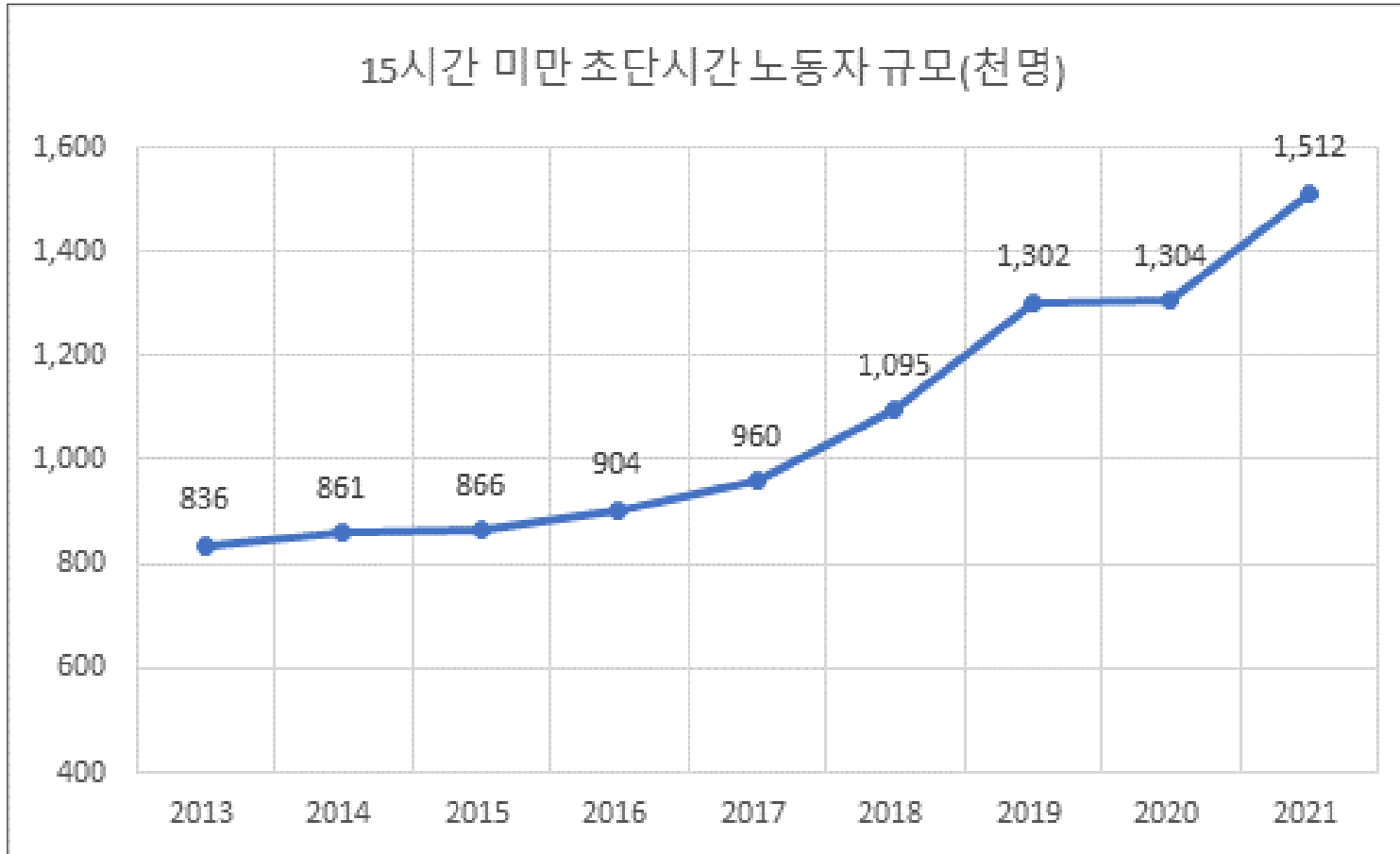
- **주휴수당** 때문이에요. 주휴수당이 부담돼서 쪼개서 구한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공석이 발생했을 때 메꾸기 위해서죠. 한 명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시간당 천 원 정도인데, 이게 여러 명이 쌓이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 치킨집이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주휴를 적용하지 않은 시급 자체도 일단은 만 원으로 잡아요.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근데 만 원으로 잡고, 주휴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1만1천원에서 1만1500원까지 잡아서 주고 있어요. 주휴수당 때문에 근무 시간이 길면 그냥 시급 자체가 확 뛰긴 하죠. 지금 제일 길게 일하시는 언니가 오픈 언니인데, 그 언니는 주 20시간 근무를 하시니까 1만 원으로 했을 때랑 1만 1300원으로 했을 때랑 계산해 보면 좀 크지 않을까요?
- 그때 직원 애를 썼을 때, 그 친구가 급여가 220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료가 한 20~3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지금 둘이서 120을 내는데 그 친구가 있을 때 거의 170~180 냈던 것 같아요, **보험료로만.**
- 돈 때문이죠. 알바하는 친구들도 다 알 거예요. 저 알바할 때는 진짜 일주일에 하루에 13시간씩 근무하는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 지금 제일 짧게 근무하는 친구가 알바를 3개를 해요. 근데 다 이제 15시간 미만이라** 버는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별로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별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도 (알바를)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 초단시간 노동자 : 규모와 추세





# 빠르게 증가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 2013년 초단시간 노동자 83.6만 명 → 2021년 151.2만 명 → 179.5만명 (2022.9)
- 주휴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사용자의 인건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초단시간 노동은 연평균 증가율이 단시간 노동이나 전일제 노동보다 높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구분	전체		1~14시간 (천명)	%	15~35시간 (천명)	%	36~48시 간 (천명)	%	48시간이상 (천명)	%
	취업자 수 (천명)	주당평균 근로시간								
2011.08	24,141	36.2	942	3.90	5,505	22.80	12,023	49.81	5,670	23.49
2012.08	24,435	35.3	972	3.98	6,571	26.89	11,718	47.96	5,172	21.17
2013.08	24,793	34.9	1,013	4.09	7,449	30.05	11,493	46.36	4,836	19.51
2014.08	25,372	35.2	978	3.86	7,892	31.11	11,621	45.81	4,879	19.23
2015.08	25,553	40.5	965	3.78	6,348	24.85	13,251	51.86	4,988	19.52
2016.08	26,016	39.6	1,035	3.98	7,604	29.23	9,543	36.68	7,832	30.11
2017.08	26,285	39.5	1,091	4.15	7,451	28.35	10,187	38.11	7,724	29.39
2018.08	26,288	38.1	1,238	4.71	8,681	33.02	9,638	36.84	6,685	25.43
2019.08	26,654	37.5	1,486	5.58	8,637	32.41	9,890	37.10	6,640	24.91
2020.08	26,238	38	1,525	5.82	4,990	19.02	13,493	51.43	6,228	23.74
2021.08	26,977	36.7	1,635	6.06	9,068	33.62	10,491	38.89	5,782	21.43

	지역별고용조사		근로환경조사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주당평균 취업시간	초단시간(%)	주당평균 취업시간	초단시간(%)	주당평균 취업시간	초단시간(%)	주당평균 취업시간	초단시간(%)
	-	-	49.2	1.38	47.5	1.80	46.9	1.72
	-	-	-	-	47.1	1.62	46.2	2.29
	44.7	2.60	-	-	46.4	1.75	44.6	3.56
	44.1	2.45	54.6	2.63	46.8	1.70	44.1	2.71
	43.7	3.13	-	-	45.4	1.93	44.2	2.61
	43.1	3.08	-	-	45.4	1.87	44.2	3.46
	43.1	3.36	44.3	3.27	44.6	1.92	43.2	4.09
	41.6	3.86	-	-	43.5	2.07	42.2	4.19
	40.7	4.45	-	-	42.8	2.49	41	4.51
	39.6	4.53	40.8	4.75	41.8	2.18	40.8	4.14

\*\* 근로환경조사는 2011년부터 3년 단위로 조사됨

# 산업별 초단시간 노동 규모

산업별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20년	%
전체	539,965	100	780,042	100	863,352	100	1,162,934	100
농림어업	24,474	4.5	23,995	3.1	24,863	2.9	30,655	2.6
광업/제조업	12,028	2.2	18,805	2.4	20,189	2.3	26,296	2.3
전기가스수도건설	14,450	2.7	18,173	2.3	15,451	1.8	39,971	3.4
도매 및 소매업	50,569	9.4	69,820	9.0	77,079	8.9	97,033	8.3
운수 및 창고업	9,297	1.7	8,729	1.1	9,309	1.1	26,745	2.3
숙박 및 음식업	54,568	10.1	90,752	11.6	93,611	10.8	142,708	<b>12.3</b>
정보통신업	3,575	0.7	5,670	0.7	7,020	0.8	9,295	0.8
금융 및 보험업	3,763	0.7	4,352	0.6	4,121	0.5	8,335	0.7
부동산업	10,092	1.9	9,677	1.2	12,367	1.4	16,740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127	1.5	9,865	1.3	10,626	1.2	21,387	1.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1,939	4.1	31,981	4.1	24,021	2.8	27,698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979	15.7	102,308	13.1	130,624	15.1	147,628	<b>12.7</b>
교육서비스업	114,717	21.3	175,755	22.5	172,037	19.9	155,772	<b>13.4</b>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4,148	13.7	133,493	17.1	182,164	21.1	296,300	<b>25.5</b>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5,474	2.9	27,432	3.5	26,346	3.1	43,474	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26,278	4.9	42,042	5.4	49,661	5.8	55,884	4.8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11,478	2.1	7,184	0.9	3,855	0.4	17,006	1.5

# 직종별 초단시간 노동 규모

직종별	2013	%	2015	%	2017	%	2020	%
전체	539,965	100	780,042	100	863,352	100	1,162,934	100
관리자	28	0.01	190	0.02	278	0.03	965	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31,448	24.3	195,243	25.0	203,542	23.6	191,473	16.5
사무 종사자	40,521	7.5	50,201	6.4	52,635	6.1	67,754	5.8
서비스 종사자	73,934	13.7	140,142	18.0	149,379	17.3	187,264	16.1
판매 종사자	46,969	8.7	67,261	8.6	78,654	9.1	116,102	1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853	3.9	18,318	2.4	20,850	2.4	27,115	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720	2.4	14,752	1.9	19,436	2.3	39,073	3.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152	1.7	13,827	1.8	15,024	1.7	28,213	2.4
단순노무 종사자	204,336	37.8	280,104	35.9	323,551	37.5	504,972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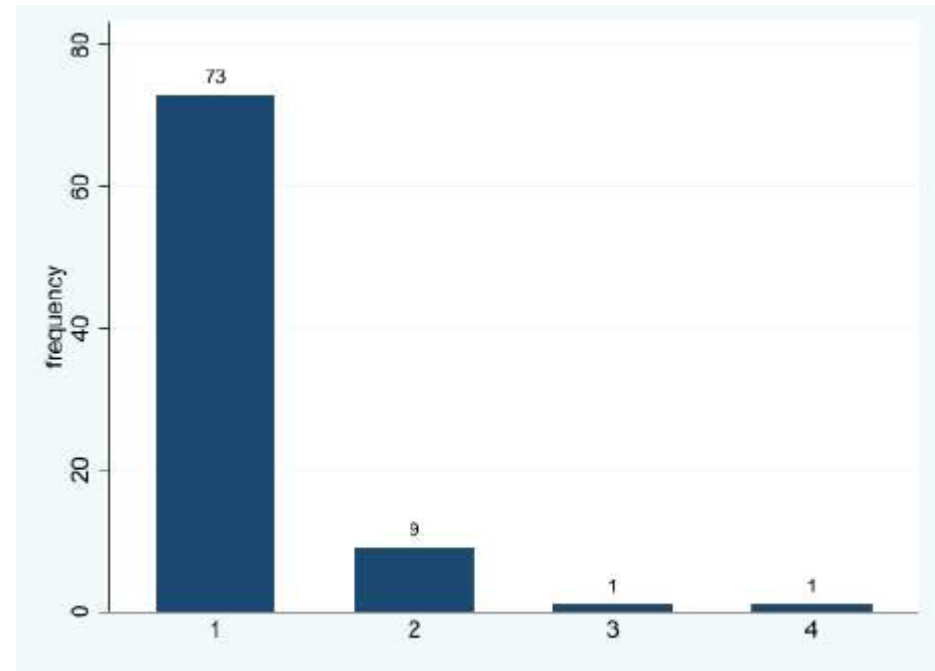
자료: 2020 지역별 고용조사

# 노동시간, 급여, 부업



〈그림 III-1〉 계약서상 주된 일 근로시간

- 2020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는 52만원



〈그림 III-3〉 부업 개수 (n=84)

- 부업 13.4% (2020 지역별고용조사 2.7%)
- 2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19.63%, 20.21%의 사람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어 부업 비중 높음

# 고용불안

고용계약기간(%)	초단시간(~14)	단시간(15~35)	표준시간(35~47)	장시간(48+)
1개월 미만	4.6	11.1	4.6	9.3
1개월~6개월	21.5	24.5	10.3	9.1
6개월~1년 미만	71.8	43.8	26.3	25.1
1년 이상	2.0	20.6	58.8	56.5

자료: 2020 지역별고용조사

사업체의 종사자 수(%)	초단시간(~14)	단시간(15~35)	표준시간(35~47)	장시간(48+)
1명	23.9	22.7	6.3	30.6
2~4명	24.5	31.7	13.7	28.7
5~9명	13.5	14.7	14.2	10.7
10~29명	14.9	13.2	20.1	9.9
30명 이상	23.2	17.6	45.7	20.1

자료: 근로환경조사 6차

# 연구 결론

---



# 1. 다양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얼굴

- 전문직 고학력 초단시간 노동자 : 학교 예술강사, 대학 비정규직 교수, 지자체 예술단원 등
- 단순 노무직, 단순판매서비스직 청년 일자리, 돌봄 일자리, 노인 일자리

〈표 Ⅲ-9〉 직종별 평균 임금

직업 분류	전체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관리자	24	168.8	11	178.2	13	16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	133.6	36	118.4	15	170.0
사무 종사자	60	132.0	54	134.2	6	112.0
서비스 종사자	202	80.2	182	77.0	20	108.8
판매 종사자	88	83.1	73	73.9	15	128.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100.0	3	100.0	0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	164.5	4	226.8	2	4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156.5	9	165.6	1	75.0
단순 노무 종사자	179	75.6	170	74.2	9	101.1
직업 군인	2	57.5	2	57.5	0	-
전체	625	94	544	88.8	81	129.3

〈표 Ⅲ-12〉 직종별 최저시급과 비율

직종	최저시급 미만 빈도	비율	평균시급(원)	직종 내 최저시급 비율	
				최저시급 미만(%)	최저시급 이상(%)
관리자	1	0.9	8,210	4.2	9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1.8	7,157	3.9	96.1
사무종사자	4	3.5	7,040	6.7	93.3
서비스종사자	32	28.1	7,334	15.8	84.2
판매종사자	22	19.3	7,596	25.0	75.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	0	-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0.9	8,505	16.7	8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0	-	0	100
단순 노무 종사자	52	45.6	6,981	29.1	71.0
직업군인	-	-	-	0.0	100.0
계	114	100	7,228	18.2	81.8



# 전문직 초단시간 노동자

---

- 전문직이라는 포장 그러나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 여러 개의 부업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배제 →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박탈감, 대출 제한 등

“팀파니 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은 이제 4인 가족인 거죠. 이걸로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방과 후, 레슨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모자라니까. 공장에 가서 일해요. 비닐 공장.”(G)

저 남자친구 사권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월급 200 정도 받아? 이러는 거예요. 말도 못 했어요. 100만 원도 못 번다 말도 못 했어. (중략) 제 등록금. 한 학기에 500만 원 넘게 내고 졸업했거든요. 저 1학년 1학기 때는 650 냈어요. (H)

- 경력이 긴 경우가 많음 : 처우나 임금에 반영 안 됨
- 직업적 정체성이 강하고, 현재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생각
- 시간을 더 내서 하고 싶은 의지가 높음
-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건 개선 시도가 많기도
- 14년이나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 일 얼마나 했어? 이러면 14년이라고 하면, 진짜 졸업하고 14년이나 한 직장에서 대단하다, 이러는데... 다들 그렇잖아요. 이직 한 번 씩 하잖아요. 30대 초반쯤 되면 다른 일도 해볼까? 아니면 직장을 옮겨볼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저희는 14년을 이 직장에서 일했는데도 아무런... 퇴직할 때 퇴직금 하나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F)
- 우리 아이가 군대를 작년에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개도 4대 보험이 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애도 지금 몇 개월 지금 알바하고 가는데 4대보험 직장을 다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지금 너 키우려고 20년 동안 이거 했는데 아직도 4대보험이 안 되는데.(E)

# 단순 판매직 노동자

---

- 낮은 임금, 여러 부업, 사회보험 배제 등 악조건 공유
- 현재 초단시간 노동은 잠시 지나가는 임시 일자리
-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나 직접적인 불만 표출하지 않는 경우 많음
- 그러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제외 상황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님
- 유연한 개인 시간 사용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보다 유행처럼 늘어난 초단시간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일자리로 유입된 경우도 많았다.

“사실 좀 더 길게 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초단 시간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자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청소년 상담사 : 전문직이지만 지나가는 자리?

---

- 공부하면서 저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취업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집단 상담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 (동반자는) 사례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내가 사례를 만나서 그 아이를 꾸준히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P)
-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반자 시스템은 대학원 다니면서 하기 딱 좋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사례를 다루는 거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몇몇) 대학원에서 할인, 동반자들은 할인을 해줘요. 이런 게 있어서 이걸 하면서 자기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시스템이거든요.(Q)
-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쳐 가는 곳이다. 경험 쌓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셔라. 이미 그렇게 듣고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 각오하고 하죠. 동반자는 원래 그렇게 위기관리, 힘든 사례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급여는 작다는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오래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은 자꾸만 떨어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런 거를 현장에서 맨날 보니까.(Q)

## 2. 단시간 노동을 원하면 차별을 감내하라?

---

- 노동자도 짧은 노동시간을 원한다는 논리
- 학업 혹은 취업 준비와 노동을 병행하는 청년들, 육아나 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들, 신체적 정신적 활력이 낮아진 것으로 간주되는 노인들
- 주 35~40시간의 풀 타임 노동을 원하지 않는 혹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존재 :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
- 초단시간 이외의 일자리 찾기 어려운 조건
- 저도 사실 이렇게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알바를 구한지 너무 오래되긴 해가지고 잘못 느끼긴 했는데. 주변에서 다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면접자 T)
- (코로나 때) 면접자 S : 네. 쪼개고 쪼개고. 파트로 나누고....”
- “잘리듯이 나간 거죠. (...) ○○이도 2일로 줄였고 △△씨도 2일이고. 다 2일이었고.” (면접자 T)

- 말 그대로 '유연한 개인 시간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도,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을 원하는 것은 아님.
- 면접자 R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주의 다른 편의점 점포에서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한 사업주 밑에서 주 28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2개의 매장에서 쪼개기 근무를 요청하였다.
- “사실 좀 더 길게 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초단 시간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자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하루에 11시간씩 일할 때도 있었고.” (면접자 S)

- “일단 초단시간으로 돌린다는 거는 보통 업무 강도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기에는 굉장히 강도가 세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돌릴 수가 없는 일들을 초단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시키는 거야 했던 것도 (...)물류 옮기고 이제 이런 거라든가 일반인들은 초단시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하루 내내 8시간밖에 일을 안 하기는 하지만, 풀타임 8시간보다는 조금 하지만 그 강도 자체가 더 세기 때문에 나는 거의 죽는다고 봐.”(면접자 U)

〈표 IV-28〉 민간영역 모범 사례 청소 면접자 노동 실태

	면접자 V
주당 평균 노동시간 (출근일수*노동시간)	주 10시간 (4일 * 2.5시간) 병원 종업 후부터 다음 날 업무 시작 전 사이 자유롭게 근무
지난 달 수입 (연간 수입)	실수령액 월 40만원
부업 여부(종류)	육아
해당직종 경력	3년
사회보험 여부	국민연금(직장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직장가입)
퇴직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적용, 유급 공휴일 적용, 월급제 연차 휴가 적용되나 사용한 적은 없다 함.

“오히려 아이들 딱 저녁 먹여놓고 잠깐 와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오죽하면 평생 직장해라, 나보고. 자기 퇴직해도 그리고 4대 보험도 다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그만뒀도. 자기네 회사 사람들이 그만두면 제일 고민하는 게 의료보험이라고.”

(면접자 V)

### 3. 공공영역 초단시간 노동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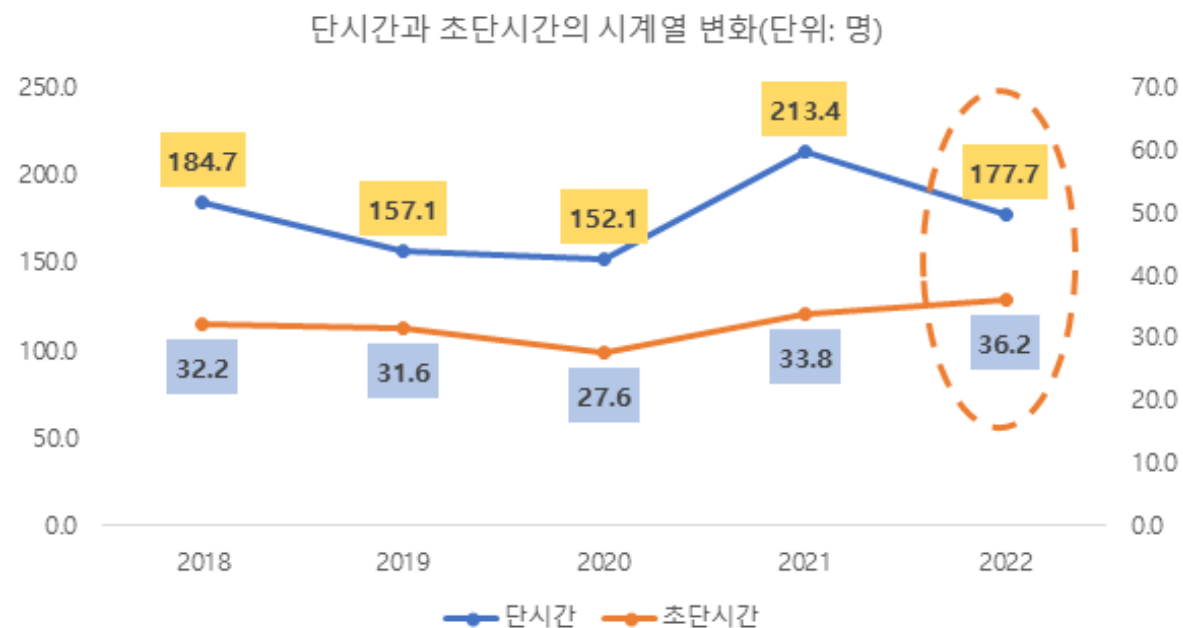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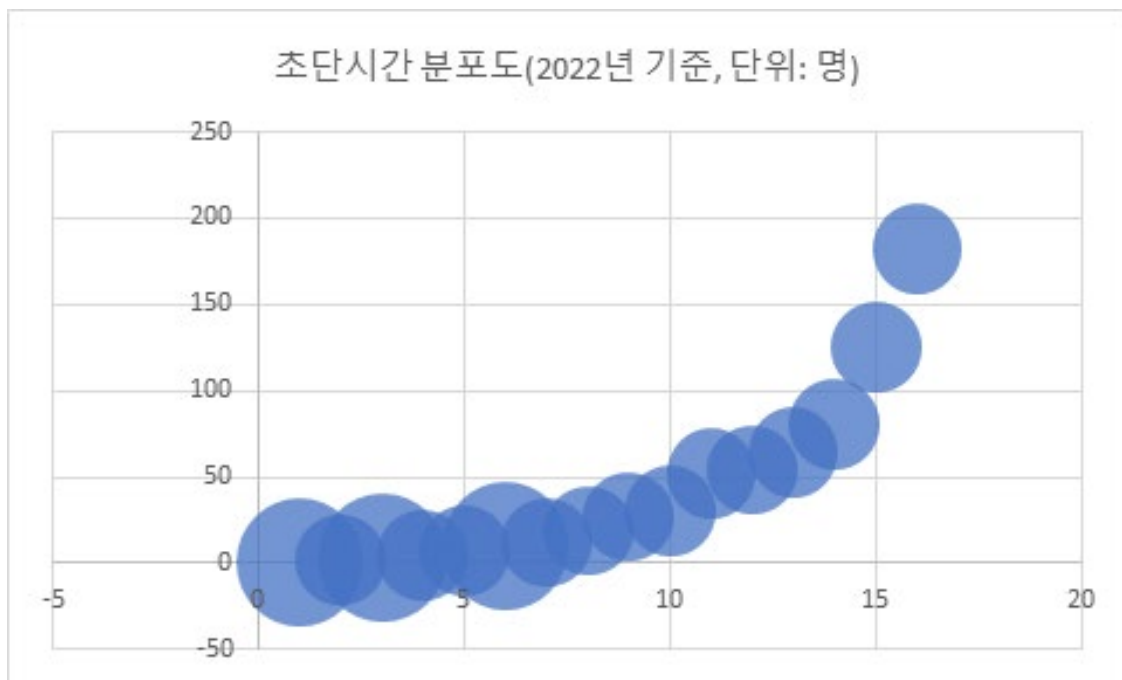
#### 산업별 초단시간 노동 규모

산업별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20년	%
전체	539,965	100	780,042	100	863,352	100	1,162,934	100
농림어업	24,474	4.5	23,995	3.1	24,863	2.9	30,655	2.6
광업/제조업	12,028	2.2	18,805	2.4	20,189	2.3	26,296	2.3
전기가스수도건설	14,450	2.7	18,173	2.3	15,451	1.8	39,971	3.4
도매 및 소매업	50,569	9.4	69,820	9.0	77,079	8.9	97,033	8.3
운수 및 창고업	9,297	1.7	8,729	1.1	9,309	1.1	26,745	2.3
숙박 및 음식업	54,568	10.1	90,752	11.6	93,611	10.8	142,708	<b>12.3</b>
정보통신업	3,575	0.7	5,670	0.7	7,020	0.8	9,295	0.8
금융 및 보험업	3,763	0.7	4,352	0.6	4,121	0.5	8,335	0.7
부동산업	10,092	1.9	9,677	1.2	12,367	1.4	16,740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127	1.5	9,865	1.3	10,626	1.2	21,387	1.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1,939	4.1	31,981	4.1	24,021	2.8	27,698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979	15.7	102,308	13.1	130,624	15.1	147,628	<b>12.7</b>
교육서비스업	114,717	21.3	175,755	22.5	172,037	19.9	155,772	<b>13.4</b>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4,148	13.7	133,493	17.1	182,164	21.1	296,300	<b>25.5</b>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5,474	2.9	27,432	3.5	26,346	3.1	43,474	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26,278	4.9	42,042	5.4	49,661	5.8	55,884	4.8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11,478	2.1	7,184	0.9	3,855	0.4	17,00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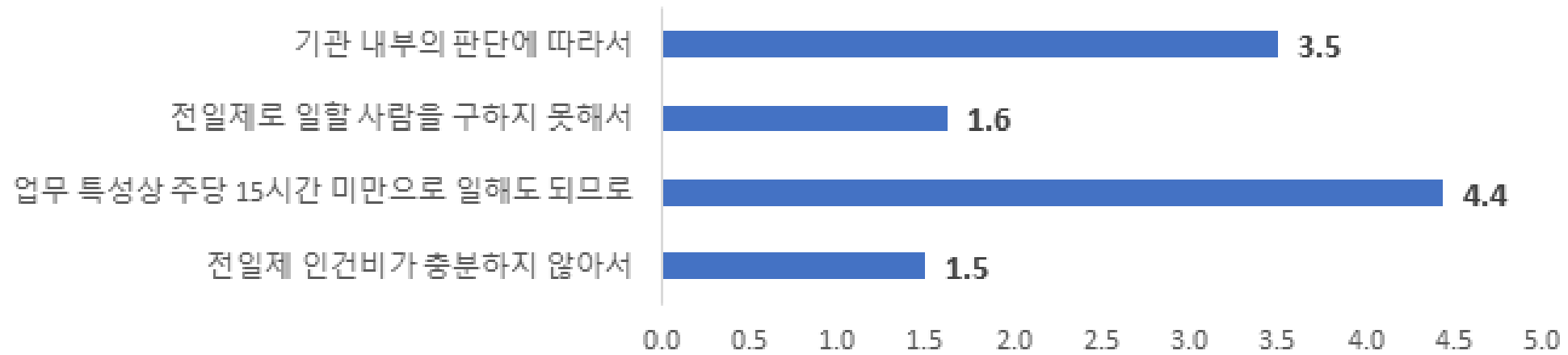


## 경기도 공공기관 초단시간 노동 이용 실태

- 182개 기관 중 50개 기관 답변
- 이 중 25개 기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활용 중이라고 응답



초단시간을 활용하는 이유(단위:5점 척도)



구분		있음 비율
초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존재 유무	정규직	18.8
	무기계약직	31.3
	기간제	12.5

# \*\*시 초단시간 노동자의 이야기

---

- 심지어 저희는 60시간 했었으니까요. 60시간 했었는데, 그거를 알게 돼서 1시간을 빼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14시간으로 딱 맞췄는데, 옛날에는 주 14시간이 아니라 월 59시간, 이렇게 하면 어떤 주는 14시간이 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무조건 14로 맞추라고. 그래서 제가 5-5-4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 공공기관 말고 카페나 음식점 같은 그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 교육 같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더 해가지고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걸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공공기관은 적어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할 수 있게 뭔가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천에 아트센터라고 새로 개관을 했어요. 공연에 안내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공연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하기 1시간 반 전, 아니면 뒤에 정리해야 되니까 30분,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시간만 주에 몇 번 보니까 그분들도 초단 시간으로 되더라고요.

# 요양보호사 : 초단이 아닌데 초단이 되는

- 계약서는 보통 월 5일에. 그러니까 주 5일에 하루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소정 근로 시간을 이렇게 했다라고 우기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 시간은 적어지면 여기서 이제 사후적으로. 그날 통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후적으로 이게 초단시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초단 시간으로 하는 건 없고. 근데 최근에 59.5시간 제가 근로계약서 한번 본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악의적인 거고. (공공운수노조 활동가)
- 15개월 이상 일을 했는데 그 15개월 중에 한 3개월을 60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60시간 이상인 날이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 보전이 되도록 대법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개월만 일했어.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중에 한 달이 빠져요. 그러면 60시간 미만인 달이 그 3시간 때문에 퇴직금 전액이 없어져 버려요. (공공운수노조 활동가)
- 근로계약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우리는 주 5, 6회 한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일 하다 보면 뭐 어르신. 우리 상황이 아니고. 어르신 상황에 따라서 주 3회가 될 수도 있고. 주 4회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해서 나중에 퇴직금 정산했을 때 내가 계산한 것보다 한 3년이 날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N)
- 내가 한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 따져봤더니. 이제 60시간. 한 달에 60시간 안 돼서 4대 보험이 끊긴 기간들이 중간 중간에 있어 갖고. 그러면 센터에서 처음에 입사한다든지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고 우리는 몰랐지. 근데 그 시간을. 그 1년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재입사로 되고...(N)

# 울산 동구, 전국 첫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입력: 2022-11-08 15:47 | 수

-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과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최소 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해준다.
-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 동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내년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한다.
- 동구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위해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 정부 재정이 투입될 장애인일자리외의 경우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내부적으로도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동구처럼 작은 데서 이런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 여파가 클텐데, 감당 가능하겠냐는 얘기도 있었다. 특히 당장은 50여명이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등 여기저기서 요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정규직 요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 맞냐는 의구심들이 있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울산 동구 관계자)

- 학교 스포츠강사 : 21시간 수업을 하고 40시간 근무를 인정
- → 대학 비정규직 교수나 지자체 예술단, 학교 예술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직 초단시간 노동자에서 적용 가능
- 똑같은 지자체 예술단이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지역은 정규 노동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로, 다른 지역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구성

## 4. 민간 영역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다면적 접근

---

- 음식점 및 판매서비스업 일자리의 경우 대다수의 일자리가 초단시간으로 재편되고 있음
- 항상 비용 측면에서 압박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익을 상승시키는 방법 : 인건비 최소화 → 이를 위해 쪼개기 계약
- 심지어 현행 법·제도 상 초단시간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은 엄연히 합법
- “본사에서 먹는 거는 물류(재료), 물류를 본사 것으로 다 사야 되죠. 본사 거 쓰라고 해. (...) (최근) 가맹점에서도 들고 일어났다고. 10잔 마시면 1잔 더 주는 거 있잖아요. (...) 본사가 가맹점에 너무 부담을 주는데, 본사는 부담하는 게 없잖아.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그건 본사가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카페 사장님)
- “배달비 어마어마하죠. 직접 배달을 안 뛰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제 동생이 배달해요. 배달을 직접 안 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서 진짜 많이 파는 매장들도 주인 분들이 다 배달을 해요. (...) 왜냐하면 배달비가 5천원 정도 되거든요. 수수료, 부가세 포함 음식 하나에 소비자가 2만 원을 냈다 그러면 거기서 배달비가 5천 원 빠져나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치킨집 사장님)

- 
- “(단시간으로 고용할 때) 1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정도 되네. 1명은 3일이 있고, 1명은 4일이었거든요. 3일 일하는 친구가 주휴수당이 대략 대충 한 20만 원, 그리고 4일 일하는 친구도 한 30만 원.” (카페 사장님)
  -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이 자주 바뀌고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월 화수목금토일을 이틀씩 4시간을 쓴다고 했을 때, 2명 쓰면 2명한테만 가르치면 되는 걸, 3명이 되면 또 3번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치킨집 사장님)
  - “사실 약간 애들(초단시간)에 대한 대우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짧게 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1명이나 2명을 오래 보고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그만큼 더 챙겨주고 돌봐주고 싶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4명이 돼버린다고 쳤을 때, 이 4명한테 다 같은 마음으로 잘해주고 어려움이 없는지를 다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치킨집 사장님)



- 
- 노동법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차별을 없애는 것만큼, 실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인건비를 아껴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대안도 중요한 과제
  - 법적 개선이 있기 전까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단시간 노동자 사회 보험 지원이나 프랜차이즈 상생 방안 지원 등의 정책 필요

##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목소리

---

- 흩어져서 일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많이 분포
-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소수가 됨.
-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평일 알바들이랑 행사 이벤트 전날에 이제 밤에 매대 진열하면서 마주 치거나 그러는데 가끔 이제 대타 뛰어준다고 그러면서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부터 이제 뭔가서로 얘기하다가 인수인계 같은 거 하고 이제 넘겨주면은 이제 막 자기들 끼리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막 약간 속삭이거나 대놓고 혼자말 식으로 뭐라고 하거나 갑자기 주변을 약간 좀 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 “비상임 지휘자들이 못 만든다 그랬었어요. 노조 못 한다고.(중략) 니네 못 만들어, 이제. 너네 비상임이라서 못 만들어. 이렇게.” (면접자 G)
- 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양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야말로 노동 조합으로 스스로 조직하고 싸워야 함.

-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법적 차별에 노출될 뿐 아니라 차별 경험, 불안정한 고용조건, 폭력이나 괴롭힘 등 다른 측면의 노동권 역시 취약

〈표 Ⅲ-25〉 고용·업무상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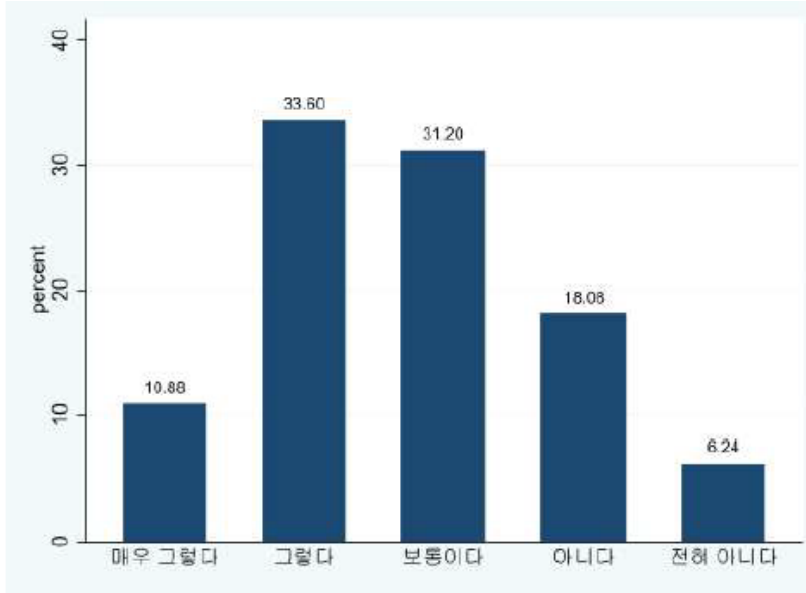
순위	불이익 내용	%
1	일(직장)을 시작할 때 별도의 교육·훈련 시간이 제공되지 않음*	61.32
2	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49.78
3	근무 기간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42.52
4	일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시간제로 투입되는 일이다.	38.41
5	원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32.95
6	시간외 수당이나 주말/휴일 수당 등의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30.44
7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8.83
8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경험이 있다	28.47
9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른 시간제 근로를 병행해야 한다	27.22
10	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무시간이 더 긴 비정규직 동료가 있다	25.25
11	정규직의 빈자리를 메우는 형태의 일이다	20.14
12	일(직장)을 시작했을 때 일정기간 연수/수습기간이어서 약속한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험이 있다.	19.79

\* 실제 설문지에는 각각 '~ 시간이 제공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로 질문하였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불이익 내용으로 바꾸어 계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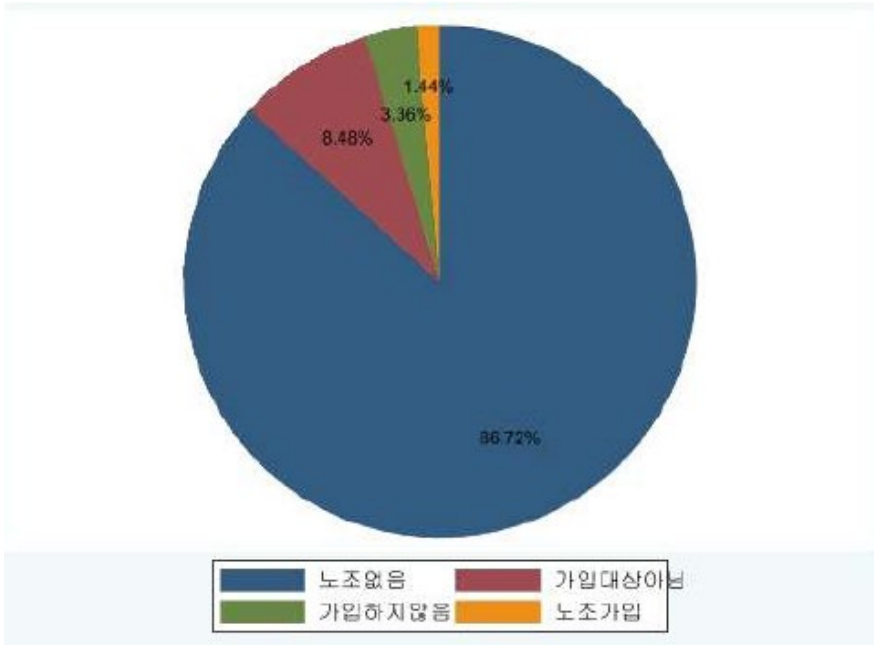
〈표 Ⅲ-26〉 불이익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해결

순위	불이익 내용	%	항의/시정 요구 (%)		시정 여부(있다=100%)		시정 요구 하지 않은 이유(없다=100%)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해당 없음)	기타
1	일(직장)을 시작할 때 별도의 교육·훈련 시간이 제공되지 않음*	61.32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해당 없음)	
2	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49.78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해당 없음)	
3	근무 기간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42.52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해당 없음)	
4	일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시간제로 투입되는 일이다.	38.41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재계약 등 불이익 두려움	11.1
5	원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32.95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요구해도 시정 안될 것 같아서	17.5
6	시간외 수당이나 주말/휴일 수당 등의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30.44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욕설/폭행에 대한 두려움	2.5
7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8.83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17.8
8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경험이 있다	28.47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문제라 인식 안함	51.1
9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른 시간제 근로를 병행해야 한다	27.22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10	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무시간이 더 긴 비정규직 동료가 있다	25.25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11	정규직의 빈자리를 메우는 형태의 일이다	20.14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12	일(직장)을 시작했을 때 일정기간 연수/수습기간이어서 약속한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험이 있다.	19.79	있다	없다	시정됨	시정되지 않음		
			전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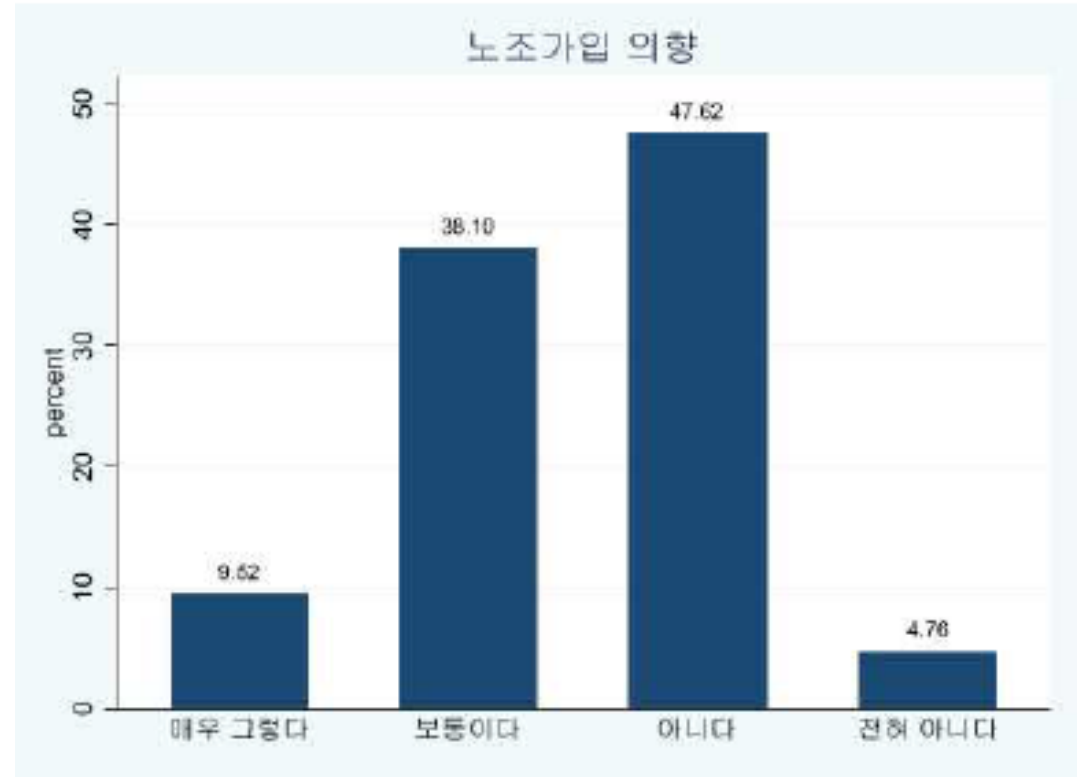
- 
- 기초 지자체 예술단, 비정규대학교수, 학교 예술강사 : 노동조합 경험
  - 사회보험 적용 확대, 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보, 전반적인 노동권 확대
  -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모습처럼 재단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노동자의 눈치도 살피고, 노동자의 말도 이젠 듣는 척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면접자 1)
  -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여 집합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성과를 만드는 사례 알리기
  - 이들의 목소리가 서로 엮이고 사회에 드러나도록 지원
  - 기존의 노동조합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
  - 노조 외에도 다양한 노동 지원 조직 등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사업 확대, 노동 관련 의제와 투쟁의 무대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초단시간 노동자/사업주에게 교육,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초단시간 다루기



〈그림 Ⅲ-11〉 대변단체의 필요성



〈그림 Ⅲ-12〉 노동조합 가입여부



〈그림 Ⅲ-13〉 노조 가입 권유시 가입할 의향 여부

87% 노조가 없어 가입 못 함  
1.4%만 가입 상태

# 정책 과제

---



〈표 VI-1〉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정책 추진 로드맵

구분	단기 정책 (2023년 추진)		중기 정책 (2024~25년 추진)		장기 정책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공공+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프로그램 (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연차유급 휴가 시간 비례 적용 추진</li> <li>② 상시·지속업무 초단시간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 포함</li> <li>③ 초단시간 사회보험 가입 추진</li> <li>④ 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구 공공부문 초단시간 노동 활용 실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경기도 초단시간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출 등 적극행정 추진</li> <li>⑥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여론 조성</li> <li>⑦ 초단시간 노동자 법률상담</li> <li>⑧ 초단시간 불법행위 예방 활동</li> <li>⑨ 초단시간 보호 우수업체 인증 및 혜택부여</li> <li>⑩ 초단시간 오남용 금지 노동인권교육 및 사업주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기도 공정수당을 시군 초단시간 노동자로 적용 확대</li> <li>② 기초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공동지원 사업</li> </ul>	-
제도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기도 공공부문 초단시간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li> <li>② 경기도 최소노동시간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단시간 법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li> </ul>

# 감사합니다

minchoi2015@gmail.com

kilsh.or.kr

